

교직원 호봉 특별승급 규정

개정 2019.05.22. 개정 2020.02.27

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혜전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.)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에 대하여 재직 중에 승진하였을 경우 호봉 특별 승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교원 승진) <신설 2020.02.27.>

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에 대하여 재직중에 승진하였을 시에는 [별표 1]에 정하는 바에 따라 1호봉 승급으로 재획정한다.

제3조 (일반직 승진)

일반직원(기능직 포함)의 승진시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은 [별표 1]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재획정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 제 3조는 1987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경과조치)

이 규정 제정 전에 승진된 교원은 이 규정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행하되 재 획정일은 이 규정 시행일로 한다.

제3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198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제4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199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제5조 (경과조치)

이 규정 개정 전 1991년 11월 28일자이후 승진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호봉을 조정한다.

제6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1996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제7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01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제8조 (경과조치)

이 규정 시행 전에 대학학력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자에게는 2001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제9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02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제10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04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제11조 (경과조치)

이 규정이 시행되기 전인 2004년 03월 01일 이전에 특수자격 취득자는 이를 인정한다.

제12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2년 07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6.03.31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6년 03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9.05.22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9년 05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0.02.27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0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 <신설 2020.02.27.>

승진호봉 확정표

교원

승진 전 호봉	승진 후 호봉	승진 전 호봉	승진 후 호봉	승진 전 호봉	승진 후 호봉
1	2	12	13	23	24
2	3	13	14	24	25
3	4	14	15	25	26
4	5	15	16	26	27
5	6	16	17	27	28
6	7	17	18	28	29
7	8	18	19	29	30
8	9	19	20	30	31
9	10	20	21	31	32
10	11	21	22	32	33
11	12	22	23	33	근속가봉

※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 3(근속가봉)에 의거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교원은 근속가봉으로 지급. 가산횟수는 10회를 초과하지 못함.

[별표 2] <개정 2019.05.22.><표율김 1→ 2 2020.02.27.>

승진호봉 확정표

일반직원(기능직 포함)

승진 전 호봉	승진 후 호봉	승진 전 호봉	승진 후 호봉	승진 전 호봉	승진 후 호봉
1	1	12	11	23	22
2	1	13	12	24	23
3	2	14	13	25	24
4	3	15	14	26	25
5	4	16	15	27	26
6	5	17	16	28	27
7	6	18	17	29	28
8	7	19	18	30	29
9	8	20	19	31	30
10	9	21	20		
11	10	22	21		